

휴대폰파손보험 II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기타/기타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휴대폰파손보험 II

3. 보험의 목적

- 1) 피싱·해킹 금융사기에 의한 금전손해
- 2) 이동통신단말기 - 휴대폰, PDA 등
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, 보험기간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다.

보험기간	보험료납입주기
1년	일시납, 12회납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
- 1) 보험료의 할인·할증에 관한 사항 : 보험업감독규정 제7-77조에서 정한 보험료의 할인·할증은 “보험료의 할인·할증기준”에 따른다.
- 2) 판매채널 : 범용 (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.)
- 3)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 - ①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·제공·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.
 - ② 판매·제공·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③ 재화·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,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 - ④ 인터넷 홈페이지[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 및 그 밖에 이와

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]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한다.

가.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

나.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

Chubb. Insured.SM